

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2005. 7. . (제 17 회)

제출일자	2005. 6. .
제 출 자	계 룡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두마면 광석리의 관할구역중 대전~논산간 국도를 사이에 두고 나분들과 합판리로 나누어져 있어, 주민간 협력체제유지와 행정수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려워 지리적 여건에 따라 광석리를 광석1리 및 광석2리로 分里하고 그에 따른 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제2조제2항 별표2중 두마면 광석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함.

면·동	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(자연마을명)
두마면	광석리	2	광석1리	옹골, 방죽안, 강당, 나분들
			광석2리	합판리

3. 입법예고 : 의견제출 없음

4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
- 예산조치사항
 - 소요예산(리장수당등) : 3,280천원(1명×3,280천원×1년)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·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·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

계룡시 행정리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

면·동	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(자연마을명)
두마면	두계리	3	두계1리	구례실, 장터, 아래장터,삼거리
			두계2리	고라터, 역전, 도독골, 뒷골
			두계3리	윗팔거리
	왕대리	2	왕대1리	평말, 아랫말, 윗말
			왕대2리	안산밑, 반촌말, 재실말, 새양골
	입암리	1	입암리	가좌골, 선바위, 음달리, 은골, 음터골, 원다리, 뒷골, 새터, 수복동, 중새터
	농소리	2	농소1리	용수말, 구역말, 원터, 서파탕이, 점말골, 회음동
			농소2리	사자골, 삼거리, 가래울, 아랫대실, 노동, 하노골
	유동리	4	유동1리	여대미, 배나무골, 버들골, 사랑재
			유동2리	소라실
			유동3리	대동 황토방아파트101~108동
			유동4리	대동 황토방아파트109~117동
	광석리	2	광석1리	옹골, 방죽안, 강당, 나분들
			광석2리	합판리
	도곡리	2	도곡1리	장자동, 윗말, 아랫말
			도곡2리	배울

면·동	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(자연마을명)
	향한리	2	향한1리	동촌, 종평, 대선말, 모시박골, 맨젯골, 가마독골
			향한2리	대숨말, 운전, 고인돌, 용계말, 빗가리
	엄사리	21	엄사1리	308, 310, 251~253, 268, 269, 270, 334, 266, 267, 256~259, 265, 260, 262, 263, 340~342, 355, 356, 357, 358, 399
			엄사2리	연화동 일부, 평리
			엄사3리	212, 213, 217, 218, 216, 225, 신촌일부
			엄사4리	529, 530, 275~285, 271, 272, 305, 312, 286, 361~366, 313, 314, 318, 332, 333, 355, 359, 360, 334, 336, 337
			엄사5리	121~126, 128~129, 131~136, 245~247, 242, 243, 190~192
			엄사6리	경남아파트
			엄사7리	동아아파트
			엄사8리	신성아파트
			엄사9리	두산아파트
			엄사10리	비사벌아파트(101,103동)
			엄사11리	비사벌아파트(102,104동)
			엄사12리	167~171, 173, 175~186, 189, 283, 284
			엄사13리	삼진아파트(101, 103, 105동)
			엄사14리	삼진아파트(102동)
			엄사15리	삼진아파트(104동)

면 · 동	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(자연마을명)
			엄사16리	성원아파트 1~2동
			엄사17리	성원아파트 3~4동
			엄사18리	성원아파트 5~7동
			엄사19리	성원아파트 8~9동
			엄사20리	성원아파트 10~11동
			엄사21리	성원아파트 12~14동
소 계	9	39		
남선면	남선리	16	남선1리	군인아파트 101~104동
			남선2리	군인아파트 106~109동
			남선3리	군인아파트 110~113동
			남선4리	군인아파트 114~116동
			남선5리	군인아파트 117~119동
			남선6리	군인아파트 120~123동
			남선7리	군인아파트 124~127동
			남선8리	군인아파트 105, 128~131동
			남선9리	군인아파트 132~135동
			남선10리	군인아파트 136~140동
			남선11리	군인아파트 141, 육군@701~705동, 해군@701~705동, 군인@508동, 석계리, 용동리, 정장리, 부남리

면·동	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(자연마을명)
			남선12리	군인아파트 201~205동
			남선13리	군인아파트 206~210동
			남선14리	군인아파트 211~214동
			남선15리	군인아파트 215~219동
			남선16리	군인아파트 142~146동
	정장리		남선11리	정장리 일원
	부남리			부남리 일원
	석계리			석계리 일원
	용동리			용동리 일원
소 계	5	16		
총 계	14	55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 (자연마을명)	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 (자연마을명)
광석리	1	광석리	웅골, 방죽안, 강당, 나분들, 합판리	광석리	2	광석1리	웅골, 방죽안, 강당, 나분들
						광석2리	합판리

관 련 법 령(발 체)

□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·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“지방의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구역변경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동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·리(이하 “행정동·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제5항의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